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총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남범우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4월 13일

○ 회부일자 : 2021년 4월 16일

3. 제안이유

○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출연목적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지사 협약(20. 7.10)

○ 출연내역

- 공동유치위원회 국내외 유치활동 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 공동유치위원회 사업비 및 운영비 7,000백만원(전액 도비)

※ 4개 시도 각 2,000백만원 부담(총 8,000백만원)

(충북도 예산편성: 법인출연금 7,000백만원, U대회추진과 1,000백만원)

5. 검토의견

- 이번 출연계획안은 2021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계획안 7쪽에서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을 출연의 근거로 하고 있음.
- 먼저 출연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면, 출연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행정 법령에서는 행정주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연구기관, 기금, 공단 등 출연 대상주체에 대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전급부를 말함.
- 출연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국가의 경우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삭제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이하“유치위원회”라 함)가 출연의 대상기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제4호에 의하면 유치위원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므로 이 법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출연기관이라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과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제1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출연계획안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을 검토해야 함.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나 보조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은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졌다는 의미는 개별 법령에서 해당 기관의 목적과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는 국가나 지자체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별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령”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4조의 책무규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하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또한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는 현재 조례안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본회의 의결, 충청북도 이송,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출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 등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며, 국제경기대회 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했던 타 시도의 사례(광주, 대구 등)를 참고하여 법적 근거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출연계획안. 끝.